

#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2. 9. 23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. 9. 5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. 9. 13.
- 다. 상정일자 :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22. 9. 23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노인장애인과장

### 가. 제안이유

노년층에 대한 능동적인 노인복지 구현을 위해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를 법인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위탁사무명 :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
- 2) 민간위탁 내용
  - (가) 민간위탁기간 : 2023. 4. 1. ~ 2028. 3. 31.(5년)
  - (나)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### 3)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
- (가) 노인복지관의 시설 운영,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
- (나) 노인복지관의 시설물, 장비, 물품, 비품 등 일체
- (다)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일체

### 4) 위탁시설 개요

- (가) 위치: 마포구 토정로31길 31
- (나) 시설규모(대지면적/연면적) : 1,263 $m^2$ /3,662.05 $m^2$   
(복지관 전용면적 2,122.82 $m^2$ )
- (다) 시설현황 (용강동 복합청사 중 3,4층을 위탁 운영)

층별	용도	면적(㎡)
5층	계단실, ELEV홀	45.05
4층	경로식당, 강당, 실버카페 등	565.73
3층	용강노인복지관, 대한노인회 마포지회	634.69
2층	자치회관, 동대본부	631.42
1층	용강동주민센터, 어린이집	707.32
지층	주차장, 다목적실	1,077.84

### 4)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(가) 소요예산: 648,302천원(전액 구비)
- (나) 산출근거

구분	금액	비고
인건비	412,689천원	기본급, 수당, 퇴직적립금 등
운영비	69,188천원	공공요금, 수용료, 차량비 등
사업비	156,909천원	상담, 재가복지, 사회교육사업 등
시설비	9,516천원	자산취득비, 시설장비유지비
<b>합 계</b>	<b>648,302천원</b>	

### 5) 세부추진일정

- (가) '22. 9월 : 민간위탁체 선정 방침 수립
- (나) '22. 10월 ~ 11월 : 공개모집 공고 및 심사
- (다) '22. 12월 : 협약체결

### 3. 검토보고 (김동원 전문위원)

- 본 동의안은 『사회복지사업법』 제34조,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5조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근거하여 노인 복지시설인 「용강노인복지관」 운영사무를 전문적인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.
- 현 용강노인복지관 위탁사무는 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와의 위탁기간이 '23.3.31.까지로 다가옴에 따라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,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용강노인복지관 시설운영 및 인력 운용 등 관리일체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5년,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.
- 본 건 “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”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제5항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필요한 사무에 해당됩니다.
- 따라서, 본 동의안은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,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 [ 관련법규 ]

### <사회복지사업법>

####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  
...  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### <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>

####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-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, 2019. 6. 12., 2020. 1. 3.>

####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  2. 위탁계약기간
  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  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  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 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  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  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### <노인복지법>

#### 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3. 13.>
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·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6. 7., 2018. 3. 13.>
-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1999. 2. 8.,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6. 7., 2018. 3. 13.>

<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>

제5조(운영의 위탁 등)

-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20, 2020.12.31.>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